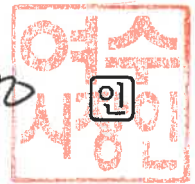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김우민



여수시 조례 제2180호

붙임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를 “자진하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통안전 교육 등)”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3호”로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6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2. -----	-----	-----
		- <u>자진하여</u> -----	-----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u>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u>		
		2. <u>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u>		
		3. <u>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u>		
		4. <u>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u>		
		5. <u>그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3호-----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환수)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